

2013년도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

농림수산식품부

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

■ 2004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3년 상반기 중(3월 이후)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미 농업부는 2012년 11월, “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”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,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1개월후 시행하게 된다.
 - 그간 미국 측은 서류심사, 현지조사,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, 평가 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.
- 우리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, 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·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■ 시행일 : 2013년 상반기

■ 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(044-201-2457)

축산업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(2013~2016년)으로 전환하고, 축산업 등록대상 축종을 확대

- 일정규모 이상 가축(소, 돼지, 닭, 오리)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

-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, 부화업,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,
 - 가축사육업은 축종별(소, 돼지, 닭, 오리 등)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~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

〈축종별 축산업 허가제 도입계획〉

(단위: m^2)

규모	기업	전업	준전업	소규모
시기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축종	소	1,200초과	600초과~1,200	300초과~600
	돼지	2,000초과	1,000초과~2,000	500초과~1,000
	닭	2,500초과	1,400초과~2,500	950초과~1,400
	오리	2,500초과	1,300초과~2,500	800초과~1,300

-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.
 - ※ 등록기준 : (현행) 소 300 m^2 , 돼지 등 50 m^2 초과 사육시설 → (변경)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
 - ※ 등록축종 : (현행) 4종(소 · 돼지 · 닭 · 오리) → (변경) 11종 우제류 · 가금류

- 시행일 : 2013. 2. 23

- 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(044-201-2317)

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

-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‘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’을 추진할 계획이다.
 -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%임을 고려할 때,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~15%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※ 지원규모 및 조건(안) : 1,700억원(3%, 2년 상환)
※ 향후 구체적인 계획 및 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(www.mifaff.go.kr)참조.
- 시행일 : 2013. 2. 1.
- 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(044-201-2342)
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

-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된다.
 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 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(2013), 육계(2014), 한·육우 및 젖소(2015)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.
 -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,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.
- 시행일 : 2013. 5.(잠정)
- 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(044-201-2355)

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

- 동물 보호와 유기·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.
 -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하면 된다.
 -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.
 -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·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, 유기·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,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시행일 : 2013. 1. 1.
- 문의 :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(044-201-2355) 